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1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 박해철 · 송옥주 · 임미애

박지원 • 이정문 • 한민수

권향엽 · 정일영 · 손명수

맹성규・김 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 의 15(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) 또는 100분의 17(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에 해당하는 금액을 1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 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

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다. 이 경우 무주택 요건 외의 공제 요건, 공제율 및 공제액한도는 제1항 본문 및 단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) 제9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"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제2항"을 "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제3항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	제95조의2(월세액에 대한 세액공
제) ① (생 략)	제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
	택을 보유한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
	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
	<u>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</u>
	원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 또는
	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
	전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
	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
	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
	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
	따른 공제를 적용한다. 이 경우
	무주택 요건 외의 공제 요건,
	공제율 및 공제액 한도는 제1
	항 본문 및 단서와 동일한 기
	준을 적용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	③ 제1항 및 제2항
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	

한다.	
<u>③</u> <u>제1항</u> 에 따른 공제의 적용	<u>④</u> 제1항 및 제2항
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	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